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 안 번 호 5364 제출연월일 : 2024. 11. 7.

제 출 자:정 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세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사람이 교정시설 등에 체포·구속·유치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 교정시설의 장 등에게 송달하도록 하고,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세액의 0.66퍼센트에 해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며, 지방세 납세자의 권리 강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리인선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을 개인 외에 영세법인까지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2024년 9월 2일 국회에 제출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안」(의안번호 제3518호) 및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지방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36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 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 야 할 것임.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송달받아야 할 사람이 교정시설 또는 국가경 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구속 또는 유치(留置)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에는 해당 교정시설의 장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송달한다.

제34조제1항제12호라목 중 "납부지연가산세"를 "납부지연가산세 및 제56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로 한다.

제35조제2항제3호 중 "제56조제1항제3호"를 "제56조제1항제2호의2 및 제3호"로 한다.

제40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압류(「지방세징수법」 제40조, 제63조제1항제2호·제3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5호의 사유로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50조제2항제3호 중 "해당 지방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를 "발생하였을 때"로 한다.

제56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 × 1만분의 66

법률 제19229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56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71조제1항제3호나목 중 "제56조제1항제3호"를 "제56조제1항제2호의2 · 제3호"로 한다.

제93조제2항 중 "1천만원"을 "2천만원"으로 한다.

제93조의2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 1. 이의신청인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가. 개인인 경우: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금액과 소유 재산의 가액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나. 법인(「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하며, 제153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인 경우: 「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과 자산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제15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 부과·징수 등에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무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서류의 송달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송달하는 서류분부터 적용한다.
- 제3조(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항제12호라목, 제35조제2항제3호, 제56조제1항제2호의2및 제71조제1항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4조(경정 등의 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5조(이의신청 대리인 선임 기준 완화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이의신청을 한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 다.
- 제6조(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의 신청자격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93 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의 선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8조(서류의 송달) ① ~ ④ (생	제28조(서류의 송달) ① ~ ④ (현
략)	행과 같음)
<u><신 설></u>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송달받
	아야 할 사람이 교정시설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
	•구속 또는 유치(留置)된 사실
	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교정
	시설의 장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u>장에게 송달한다.</u>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	
립한다.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12. 가산세: 다음 각 목의 구분	12
에 따른 시기. 다만, 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	
제46조를 적용할 때에는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이하 "법정납부기	
한"이라 한다)이 경과하는 때	
로 한다.	<u>.</u>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라

납부지연가산세: 납세고지 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경 과하는 때

마. ~ 사. (생 략)

②·③ (생 략)

- 제35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생 제35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현 략)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지방세는 납세의무가 성립 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세 액이 확정된다.
 - 1. 2. (생략)
 - 3. 제5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 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
 - ②·③ (생 략)
- 지방세징수권의 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단된다.
 - 1. ~ 3. (생 략)
 - 4. 압류

② ~ ④ (생 략) 납부지연가산세 및 제56조 제1항제2호의2에 따른 특 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

마. ~ 사.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행과 같음)

- 1. · 2. (현행과 같음)
- 3. 제56조제1항제2호의2 및 제3 ই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40조(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제40조(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 1. ~ 3. (현행과 같음)
- 4. 압류(「지방세징수법」 제40 조, 제63조제1항제2호ㆍ제3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5호의 사유로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 는 제외한다)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0조(경정 등의 청구) ① (생 제50조(경정 등의 청구) ① (현행 략) 과 같음) ②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 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 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 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 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와 유 3. ----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u>발생하였</u>을 때 정하는 사유가 해당 지방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 생하였을 때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법률 제19229호 지방세기본법 일 법률 제19229호 지방세기본법 일 부개정법률 부개정법률 제56조(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 제56조(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 ①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야 할 세액을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 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50(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을 합한 금액은 100분의 10)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제3호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기간은 60개월(1개월 미만은 없는 것으로 본다)을 초과할 수 없다.

1. • 2. (생략)

<신 설>

- 3. (생략)
- ② (생략)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5년
 1월 1일 및 2026년 1월 1일이
 속하는 각 과세기간에 발생한
 「지방세법」 제87조제1항제2
 호의2에 따른 금융투자소득의
 특별징수세액에 대한 납부지연
 가산세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
 분에서 정하는 한도에서 같은

 	_	_	_	_	-	-	-	_	_	_	_	_	-	-	-	-	-	-	-	_
 	_	_	-	-	_	-	-	-	_	-	-	_	-	_	-	-	_	-	-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	•	-										-	_	_	_	_	_	_	-
 	-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 1. 2. (현행과 같음)
- 2의2.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 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가 산세는 제외한다) × 1만분의 66
- 3. (현행과 같음)
- ② (현행과 같음)

<u><삭 제></u>

<u>항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u>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 로 한다.

- 제71조(지방세의 우선 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른
 공과금과 그 밖의 채권에 우선
 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
 과금과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
 는 우선 징수하지 아니한다.
 - 1. 2. (생략)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 전에 전세권·질권·저당권의 설정을 등기·등록한 사실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및「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確定日字)를 갖춘 사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지방세(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는 제외한다)를 징수하는

∥71조(지방세의 	우선 징 	수) ①
1.·2. (현행과 경 3		
J		

경우의 그 전세권·질권·저 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등 기 또는 확정일자를 갖춘 임 대차계약증서상의 보증금 가. (생 략)

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
자치단체가 결정 또는 경
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해
당 세액(제55조제1항제3호
•제4호에 따른 납부지연
가산세 및 제56조제1항제3
호에 따른 특별징수 납부
지연가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납세고지서의 발
송일

다. ~ 마. (생 략)

4. • 5. (생략)

② ~ ⑥ (생 략)

제93조(이의신청의 대리인) ① (생 략)

② 이의신청인은 신청 금액이 1 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그의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③ • ④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제56조제1항제2
호의2·제3호
<u> </u>
rl - 미 (처체코 가ㅇ)
다. ~ 마. (현행과 같음)
4. • 5.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93조(이의신청의 대리인) ①
(현행과 같음)
② 2
천만원
③·④ (현행과 같음)

제93조의2(지방자치단체 선정 대 리인) ①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이 조에서 "이의신청인등"이라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대통령증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변호사, 세무사 또는「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정하여줄 것을 신청할수있다.

1. 이의신청인등의 「소득세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 합소득금액과 소유 재산의 가 액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금액 이하일 것

세93조의2(지방자치단체 선정 대
리인) ①
1. 이의신청인등이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개인인 경우: 「소득세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금액과 소유 재산
의 가액이 각각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u>것</u>
나. 법인(「법인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외
국법인을 말하며, 제153조
에 따라 준용되는 「국세

2. 이의신청인등이 법인(제153] 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세기 본법」 제13조에 따라 법인으 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이 아닐 것

3. ~ 5. (생 략)

② ~ ④ (생 략)

제150조(지방세 운영에 대한 지도 | 제150조(지방세 운영에 대한 지도 등) ①・② (생 략)

<신 설>

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 함한다)인 경우: 「법인세 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 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 과 자산이 각각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삭 제>

3. ~ 5.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 부 과 · 징수 등에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무 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